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58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2. 23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1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2. 16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1997. 12. 23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○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공립보육 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
○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61세,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로 규정함. (안 제12조의 2)

○ 시설장의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2조의3)

○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종전에는 3일 내지 20일까지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4일 내지 23일까지로 함.(안 제14조제1호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 범위와 시설장과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, 시설장의 근무기간, 임용·복무 등 상위규정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하고

○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한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조례안과 관련되는 시설은

● 답 : 배둔어린이집 1개소임.

○ 문 :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와 시설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10년 기준으로 한 이유는

● 답 : 종전에는 정년기준이 없었으며, 기존 근무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보육사업지침 및 인근 시군조례를 감안하여 근무상한 연령과 기간을 적정수준으로 정하였음.

6. 토 론 : 근무상한 기간 10년은 너무길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정치 않음.

7. 심사결과

○ 1997. 12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